

#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3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김춘례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태호, 최영주, 경만선,  
오한아, 노승재, 안광석,  
유정희, 송아량, 최정순,  
박기재, 이은주, 이승미,  
김경영, 정진철, 김정환  
의원(15명)

### 1. 제안이유

- 국공립 외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·감독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- 또한 지역 문화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·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

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함.(안 제3조제2항)

나.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함.(안 제3조제3항)

다.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.(안 제3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##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·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·운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p>